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0호 2020. 3. 2.(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공 고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4
- 목포시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9
-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0
- 목포시 공인등록 공고 ----- 2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고시 제 2020-7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7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의 폐지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81번길 1	2020.3.2.	건물 철거
2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5	2020.3.2.	건물 철거
3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5-1	2020.3.2.	건물 철거
4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5-2	2020.3.2.	건물 철거
5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5-3	2020.3.2.	건물 철거
6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5-4	2020.3.2.	건물 철거
7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5-5	2020.3.2.	건물 철거
8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5-6	2020.3.2.	건물 철거
9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5-7	2020.3.2.	건물 철거
10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7	2020.3.2.	건물 철거
11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7-1	2020.3.2.	건물 철거

목포시 공고 제 2020-331호**입 법 예 고**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

목 포 시 장**1. 개정 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공모 및 제안사업 선정심사 방식을 폭넓게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 도모

2. 주요 내용

-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제1항 일부 개정
 - 개정전 :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 개정후 :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거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개정 시행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5. 관계법령 : 해당없음****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개선 사항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8. 예산사항 : 해당 없음****9.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2. ~ 2020. 3. 23. <21일>

10.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트윈스타행정타운 5층 도시재생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061-270-3630, FAX 270-3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칙(안)>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제1항 중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를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거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 (선정심사 및 통지) ①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에서 실시한다.	제11조 (선정심사 및 통지) ①-----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거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0-334 호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목 포 시 장

1. 열람기간 : 2020년 3월 7일부터 2020년 3월 11까지
(공휴일에도 열람가능)
2.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고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	

4.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kpo.go.kr>
5. 인터넷 열람방법 : 목포시홈페이지 접속하여 팝업창에 게시된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열람을 클릭하여 본인 등재 여부 확인

목포시 공고 제2020-343 호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개인 소유(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인 경우 시비 예산으로는 도배, 장판, 싱크대 설치로 한정 지원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비로는 도배, 장판, 싱크대 이외에 사업도 지원하고 있어
- 이를 개선코자 개인소유(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도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신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보수 사업을 시 예산으로도 지원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 또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수 전자제품인 냉장고 외 7종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 여건 및 기후 변화 등으로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3종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경로당(공동주택) 개보수 “시비” 지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내 용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개인건물(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도배, 장판, 싱크대에 한해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개보수 사업은 예외로 한다.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건물(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 변경(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	

나. 경로당 지원 물품 확대(안 별표 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내 용	냉장고(600ℓ 이하),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냉장고(<u>일반형</u>),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u>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뚜껑형), 전자렌지</u> ※ <u>기타 품목 지원 불가 사유</u> ○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가 어렵고, 수리비용이 과다, 지속 요구되는 안마의자, 런닝머신, 쇼파 등과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수 전자제품이 아닌 물품은 지원 제외	

3. 규칙 일부 개정 안 : 별도 첨부

4.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45조 (비용의 부담)
-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 (비용의 부담)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부담)

6. 관련부서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7. 규제심사 검토 : 해당없음

8. 예산사항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3. 2. ~ 3. 23 (21일간, 예정)

10.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기타참고 사항 : 해당없음

12.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노인장애인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2), 직접방문 등

나. 참고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61-270-8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5호 중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건물(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도배, 장판, 싱크대에 한해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개 보수 사업은 예외로 한다.”를 “개인건물(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 (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로 한다.

제 4조 3호 중 “공동주택의 경로당을 건립한 경우”를 “공동주택 경로당 건립의 경우”로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경로당 지원) 1. ~ 4. 생략 5.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u>예산 범위내에서 개인건물(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도배, 장판, 싱크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개보수 사업은 예외로 한다.</u> 6. ~ 7. 생략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1. ~ 2. 생략 3.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u>공동주택의 경로당을 건립할 경우</u>	제2조(경로당 지원) 1. ~ 4. 현행과 같음 5.----- ----- 개인건물 (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 6. ~ 7. 현행과 같음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1. ~ 2. 생략 3. -----공동 주택 건립의 경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경로당 지원물품				〔별표 1〕 경로당 지원 물품		
구 분	지원 가능 품목	지원불가 품목	비 고	구 분	지원 가능 품목	비고
건강 · 운동 기구	한궁,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안마의자, 런닝머신등		건강 · 운동 기구	한궁,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전자 제품	냉장고(600 l 이하),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 · 온수기	김치냉장고, 노래방기계, 정수기 등		전자 제품	냉장고(일반형),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 · 온수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뚜껑형), 전자렌지	
※ 운동기구 : 잦은 고장, 유지관리 어려운 건강기구 및 불안정한 운동기구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 기타품목 지원불가 사유 :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가 어렵고, 수리비용이 과다, 지속 요구되는 안마의자, 런닝머신, 쇼파 등과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수 전자 제품이 아닌 물품은 지원 제외		

노 인 복 지 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개보수 사업
3.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운영실태 조사) ①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시장·자치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2.6.11, 2013.12.23, 2015. 8.3.>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목포시의회의원
3. 목포시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그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자
-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목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로당 지원)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직선거리 0.5km 이상),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한다.
2. 기존 민간 소유경로당 건물·부지는 소유권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한 후 경로당을 신축 할 수 있다.
3. 목포시 소유 경로당으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1호 규정을 예외로 한다.
4. 경로당 이용률 낮거나 설치신고 등록기준에 미달 시 인근경로당과 통·폐합 할 수 있다.
5.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건물(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
6. 건강·운동기구, 전자제품 물품 지원은 별표1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7.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경로당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3.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 경로당 건립의 경우
4. 개인 건물(공동주택 포함) 도배, 장판, 싱크대 보수 외 개보수 사항인 경우.
5. 동일 보수 건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재해 및 시설 노후화로 피해 발생 시 예외로 한다.
6.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별표 1]

경로당 지원 물품

구 분	지원 가능 품목	비고
건강·운동 기구	한궁,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전자 제품	냉장고(일반형),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뚜껑형), 전자렌지	

※ 기타 품목 지원 불가 사유 :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가 어렵고, 수리비용이 과다, 지속 요구되는 안마의자, 런닝머신, 쇼파 등과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수 전자제품이 아닌 물품은 지원 제외

목포시 공고 제2020-292호

공인의 등록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유 : 건설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공인 신조
2. 등록일 : 2020. 3. 2.(월)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2020년 3월 2일

목 포 시 장